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12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정복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7. 16.

다. 회 부 일 : 2024. 7.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특례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u>2024년</u>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 ----- <u>2027년</u> -----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던 고등학교 교육에 대하여¹⁾ 고등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중학교 교육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었는데,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제10조의2²⁾를 신설하여 입학금, 수업료 등

1) 2019년 1학기 기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1인당 약 160만원이 한 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소요되었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교 무상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을 무상으로 함을 정하고 그 비용 부담의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임을 명시하였고, 2020학년도까지는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에 무상교육을 제공하며 2021학년도 이후부터 고등학교 등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제공하도록 정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제3조제4항³⁾을 신설하여 증액교부금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제14조⁴⁾를 신설하여 5년간(2020.1.1.~2024.12.31.)은 한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교부하기로 한 결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부담하던 5% 수준을 계속해서 부담하고 나머지 95%를 국가와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법률 제16673호(2019. 12. 3.)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고교 무상교육 주체별 비용 부담 현황 ＞

(단위: 억 원)

부담 주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가(47.5%)	6,460	9,431	9,094	9,028	9,439
교육청(47.5%)	6,460	9,431	9,094	9,028	9,439
지자체(5%)	680	992	957	950	994
합계	13,600	19,855	19,146	19,006	19,872

자료: 교육부

교육부와 재정당국, 시·도교육청 및 지방정부는 5년간의 한시적인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한 재정 대책을 논의하기로 협의하였으나, 특례규정의 일몰이 임박한 현시점까지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음.

최근의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증액교부되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7년까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누리과정 재원 부담 주체 논란과 같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고교 무상교육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특례 규정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특례 규정의 계속된 연장은 법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특례 규정에 의존하는 방식은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식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성 또한 존재함.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⁵⁾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⁶⁾에 있음을 고려할 때, 증액교부금이 없이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단위: 억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5,909	524,527	605,305	535,430	603,370	812,975	653,636	688,732

주) '23년 이전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최종교부 기준, '24년은 확정예산 기준

자료: 교육부

5) 고교 무상교육의 대상이 되는 고등학생 수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 역시 현재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반론 또한 존재함.

<고등학생 수 전망>

(단위: 만명)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학생 수	131	131	129	130	134	131	128

자료: 교육부

6)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65조 3,636억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이는 정부

한편, 교육부는 세수 결손 및 신규 수요(유보통합, 늘봄학교 등)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지방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임.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경기 악화 및 세수 부족에 따라 교육 재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및 교육청에서 전액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84

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세수재추계를 통해 10조원이 넘는 교부금을 미배정한 후 불용처리한 것임.